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5. 29 선고 2023가단2590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1. 31.

판 결 선 고 2024. 5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19,313,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0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
다. 2023. 6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,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인정

가. 원고는 2018. 4. 30.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,000만 원, 월 차임 120만 원(부가가치세 별도), 임대차기간 2018. 5. 18.부터 2020. 5. 31.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위 계약은 갱신되었다.

나.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. 6.부터 2023. 5.까지 차임 15,196,000원과 관리비 4,117,270원 합계 19,313,27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, 이 사건 소장은 2023. 10. 5.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, 제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2023. 10. 5. 해지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, 연체차임과 체납관리비 합계 19,313,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. 10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, 2023. 6. 1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,2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김진혜

별지